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이용우·임미애·손명수
김남근·박민규·김성희
김태선·신장식·백혜련
민병덕·박 정·서영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~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.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,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‘진도’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.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(규모)에서 ‘진도’를 추가하여,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

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규모”를 “규모 또는 진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·운영) ① (생 략)	제14조(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규모</u>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 <u>규모 또는 진도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